

###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8. 11. 7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8. 11. 9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6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1998. 11. 11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원태희)

가. 제안이유

○ 동사무소의 건축직을 구청으로 조정함에 따라 현재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위임사무 ————— 1건(동장 → 구청장)

•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

-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, 동일규모 안에서의 건축 및 대수선
-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 가설천막 등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 음	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###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65 호
의결년월일	98. 11. 14 (제66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11. 7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**□ 제안이유**

- 동사무소의 건축직을 구청으로 조정함에 따라 현재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조정하고자 함.

**□ 주요골자**

- 위임사무 \_\_\_\_\_ 1건(동장 → 구청장)
  -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
    -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,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
    -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 가설천막 등

###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[별표]2. 동위임사항중 도시과 위임사무명란을 삭제하고, [별표]1.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중 도시과의 위임사무명란 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실·과·소·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무법적용
도시과	7.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	가.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,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과 동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나.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항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,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 다.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 라.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 가설천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</li> <li>•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</li> <li>•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</li> <li>•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</li> </ul>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[별표] 1. 부천시사무의 구 위임사항

현 행				개 정 안			
실·과·소별	위 임 사무명	단 위 사무명	근거법 적 용	실·과·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
도시과	1~6(생략)	(생략)	(생략)	도시과	1~6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(신설)	(신설)	(신설)		7.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	가.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, 동일규모 안에서 개축 및 대수선과 동호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나.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항제4호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,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 다.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 라.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가설천막	•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제4호  •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제4호  •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제4호  •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제4호

[별표] 2. 동 위임사항

현행				개정안			
실·과·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실·과·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
도시과	1.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	<p>가.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,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과 동호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</p> <p>나.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항 제4호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,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</p> <p>다.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</p> <p>라.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가설천막</p>	<p>•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</p> <p>•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</p> <p>•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</p> <p>•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</p>	(삭제)	(삭제)	(삭제)	(삭제)